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신탁

투 자 설 명 서

욕심이 아니라 목표를 향합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KB자산운용㈜’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 자산운용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신탁

투 자 신 탁 명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신탁
자 산 운 용 회 사 명	KB자산운용㈜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JF Asset Management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판매회사	상담가능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대신증권	1588-4488/1544-2000
대우증권	1588-3322
푸르덴셜증권	1544-4588
하나대투증권	1588-3111
하나은행	1588-1111
IBK투자증권	1588-0030/1544-0050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작 성 기 준 일	2008년 09월 29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KB자산운용㈜	www.kbam.co.kr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1-1.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회사 개요
2. 판매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당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 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 페이지)

1. **명칭:**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A 클래스-70270, C 클래스-70271, C-E 클래스-76280, C-F 클래스-74216)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류:** 증권투자기구(주식형), 공모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KB자산운용㈜
5.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JF Asset Management Limited

Ⅱ 투자정보(☞본문 6~10 페이지)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1. 투자목적</td><td>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B 차이나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90%이상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임</td></tr>
<tr><td>2. 주요 투자전략</td><td>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해외주식운용은 JF Asset Management Limited에 위탁함</td></tr>
<tr><td>3. 주요 투자위험</td><td>「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가격·금리·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td></tr>
<tr><td>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td><td>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td></tr>
<tr><td>5. 기준 가격</td><td>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 가능</td></tr>
<tr><td>6. 운용전문인력</td><td>
<table>
<tr><th rowspan="2">성명</th><th rowspan="2">나이</th><th rowspan="2">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rowspan="2">주요운용경력</th></tr>
<tr><th>운용중인 펀드 수</th><th>운용중인 자산규모</th></tr>
<tr><td>임광택</td><td>44세</td><td>이사</td><td>32개</td><td>22,991억</td><td>장기신용은행 5년 8개월, 미래에셋자산운용 2년 1개월, KB자산운용 5년 9개월</td></tr>
</table>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당사 해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td></tr>
<tr><td>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td><td>이 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table>
<tr><th>연도</th><th>최근1년</th><th>최근2년</th><th>최근3년</th><th>최근5년</th><th>설정일 이후</th></tr>
<tr><td>A 클래스</td><td>3.09%</td><td>-</td><td>-</td><td>-</td><td>3.09%</td></tr>
<tr><td>C 클래스</td><td>2.04%</td><td>-</td><td>-</td><td>-</td><td>2.04%</td></tr>
<tr><td>C-E 클래스</td><td>-</td><td>-</td><td>-</td><td>-</td><td>-</td></tr>
<tr><td>C-F 클래스</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벤치마크</td><td>9.54%</td><td>-</td><td>-</td><td>-</td><td>9.54%</td></tr>
</table>
※ 벤치마크 = MSCI China Index*90%+콜론*10%, 기준일: 2008년 06월 14일
※ C-E/C-F 클래스 수익증권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td></tr>
</table>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0~13 페이지)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클래스	C/C-E/C-F 클래스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주1)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주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0.850%	연 0.850%
		판매회사보수	연 0.975%	아래 표 참조
		기타보수	연 0.075%	연 0.075%
		보수합계	연 1.900%	아래 표 참조
	기타비용		연 0.002%	연 0.002%
	총 보수·비용비율주2)		연 1.902%	아래 표 참조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입금건별 기간별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C 클래스	C-E 클래스	C-F 클래스
판매회사보수	연 1.975%	연 1.575%	연 0.030%
총 보수·비용비율	연 2.902%	연 2.502%	연 0.957%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을 부담합니다. 또한, 배당, 환차익,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중 판매회사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1 자금납입(5시 이전) / 수익증권 매입(D+1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1 — D+2 자금납입(5시 경과 후) / 수익증권 매입(D+2 기준가격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D+4 D+5 D+6 환매청구(5시 이전) / 기준가격 적용 /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D+4 D+5 D+6 D+7 환매청구(5시 경과 후) / 기준가격 적용 /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_____(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KB 차이나 주식형 자투자신탁(펀드코드: A 클래스-70270, C 클래스-70271, C-E 클래스-76280, C-F 클래스-74216)

2.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분류

증권투자기구(주식형), 공모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KB자산운용㈜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06.14 A 클래스 수익증권 및 C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설정
2007.10.01 C-F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설정
2007.11.09 환매기준일 및 환매일 변경
2007.11.21 C-E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설정
2008.10.06 A 클래스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6.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B 차이나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국 및 중국관련 시장에의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1) 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

2) 해외주식운용은 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투자에 15년 이상의 풍부한 투자경험을 가진 JF Asset Management Limited에 위탁함

※ JF Asset Management Limited란?

- 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운용능력을 가진 JP Morgan 그룹 내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임
- 아시아 지역에 대한 35년 이상의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홍콩,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내에서 특화된 브랜드로 자리잡음
- 현재 전세계 40여개의 지역에 660명 이상의 투자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Greater China팀은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60억달러(2007년 2월말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3) 환위험 관리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투자신탁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② 이 투자신탁에서 중국 및 중국관련 국가에서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선물환, 통화선물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이며, 90%수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 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1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중국관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자산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중국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며, 중국시장의 특성상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에 대해 원/홍콩달러 통화선물 등을 통한 환위험 제거를 추구합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 거래에 따른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이 발생할 경우, 또는 해당 국가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1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KB자산운용은 **동일한 조건(기간, 변동성) 하에서 VaR(Value at Risk, 이하 "위험도")를 계산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며, 이에 근거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5개의 등급(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중간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로 나눕니다.**

(시뮬레이션 횟수: 10,000회)

위험분류	위험도(99%신뢰수준, 10일VaR)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4.44%	KB 新 광개토 선취형 주식투자신탁 KB 멀티매니저 브릭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2등급	2.47%	자수성가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3등급	1.06%	KB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투자신탁
4등급	0.20%	KB스타 블루 안정혼합투자신탁 제1호
5등급	0.00%	KB스타 국공채 MMF투자신탁(개인용) P-101호

주1) 2006년 05월 01일부터 2007년 04월 30일까지 1년간의 시장데이타를 기준으로 통계값을 계산
주2) 위험도(99%신뢰수준, 10일VaR): 99% 신뢰수준에서 10일 후 발생가능한 최대 예상 손실율

(시뮬레이션 횟수: 10,00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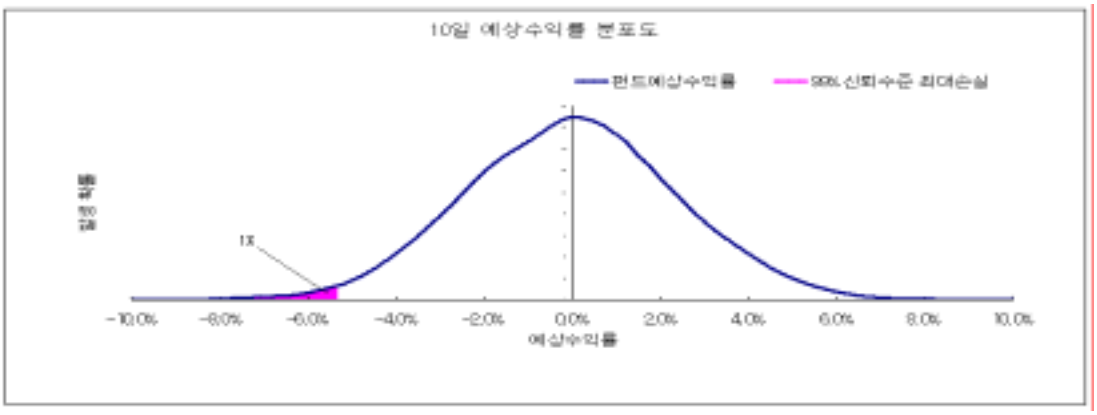

※ 이 그래프는 10일 후 수익률이 -5.37%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1%임을 의미하며, 이를 99% 신뢰수준의 10일동안의 최대손실률을 의미하는 VaR로 사용함

투자신탁의 Benchmark	위험도(99%신뢰수준, 10일VaR)
MSCI China Index * 90% + 콜론 * 10%	5.37%

이 투자신탁은 위험도가 5.37%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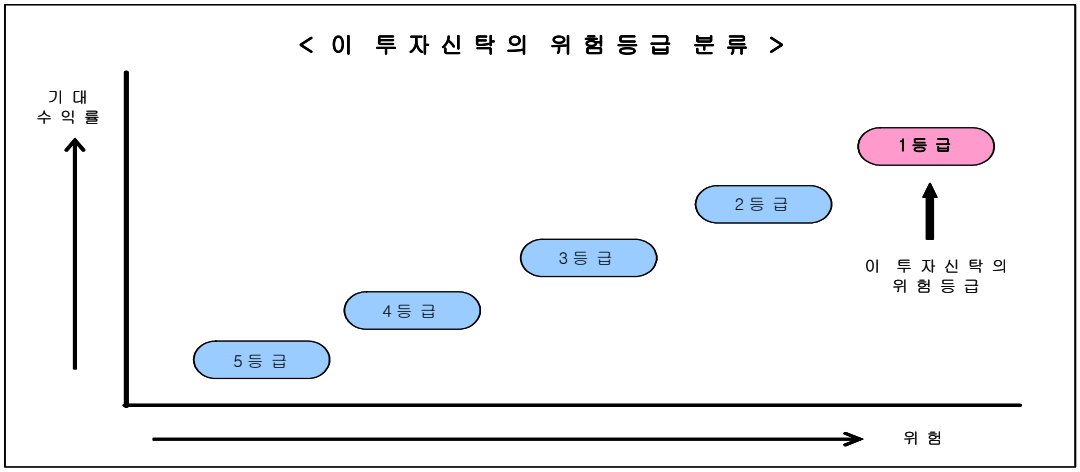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21~22페이지 참조)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 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임광택	44세	이사	32개	22,991억	장기신용은행 5년 8개월, 미래에셋자산운용 2년 1개월, KB자산운용 5년 9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팀이 공동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기준일: 2008년 06월 14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A 클래스	3.09%	-	-	-	3.09%
C 클래스	2.04%	-	-	-	2.04%
C-E 클래스	-	-	-	-	-
C-F 클래스	-	-	-	-	-
벤치마크	9.54%	-	-	-	9.54%

※ 벤치마크 = MSCI China Index*90%+콜론*10%

※ C-E/C-F 클래스 수익증권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기준일: 2008년 06월 14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3.09%	-	-	-	-
C 클래스	2.04%	-	-	-	-
C-E 클래스	-	-	-	-	-
C-F 클래스	-	-	-	-	-
벤치마크	9.54%	-	-	-	-

※ 벤치마크 = MSCI China Index*90%+콜론*10%

※ C-E/C-F 클래스 수익증권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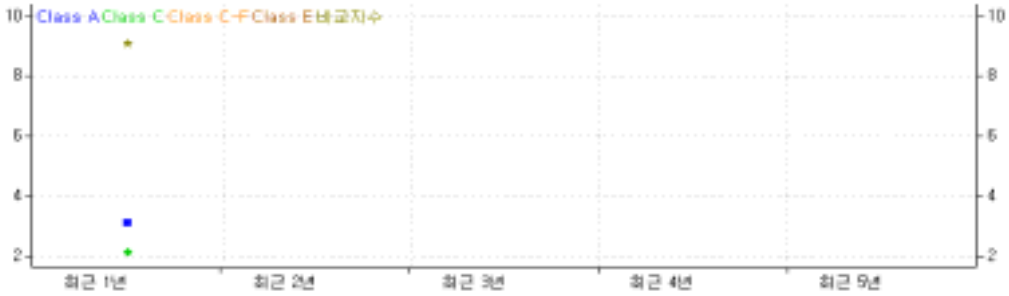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A 클래스	C/C-E/C-F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가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을 기준으로 징수)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A/C/C-E/C-F 클래스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0.85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아래 표 참조	
수탁회사보수	연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기타비용	연 0.002%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비율	아래 표 참조	

<표>

	A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C-F 클래스
판매회사보수	연 0.975%	연 1.975%	연 1.575%	연 0.030%
총 보수·비용비율	연 1.902%	연 2.902%	연 2.502%	연 0.957%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 클래스	191,795원	592,596원	1,019,615원	2,209,532원
C 클래스	291,168원	890,524원	1,516,434원	3,199,769원
C-E 클래스	251,539원	772,452원	1,320,816원	2,816,648원
C-F 클래스	96,962원	302,501원	526,666원	1,168,839원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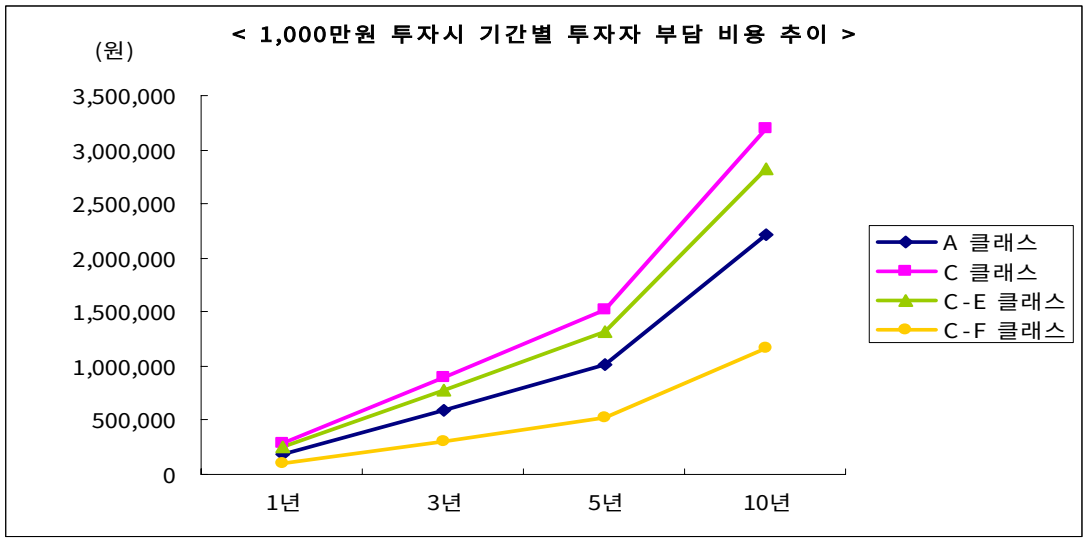

3. 투자소득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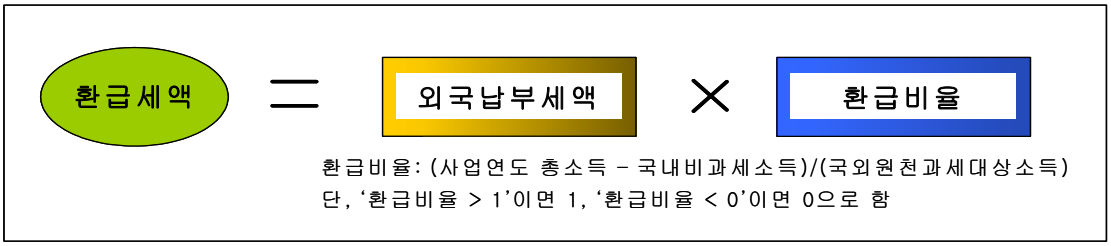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06월 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② 2007년 06월 0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06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그러나, 2007년 06월 0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06월 0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선취판매수수료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17~1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3) 환매수수료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1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이익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1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KB 차이나 주식형 모투자신탁>

1) 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시장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해외주식운용은 중국 및 중국관련 주식투자에 15년 이상의 풍부한 투자경험을 가진 JF Asset Management Limited에 위탁합니다.

※ JF Asset Management Limited란?

- 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운용능력을 가진 JP Morgan 그룹 내 글로벌 자산운용회사
- 아시아 지역에 대한 35년 이상의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홍콩,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특화된 브랜드임
- 현재 전세계 40여 개의 지역에 660명 이상의 투자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Greater China팀은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60억 달러(2007년 2월말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2) 투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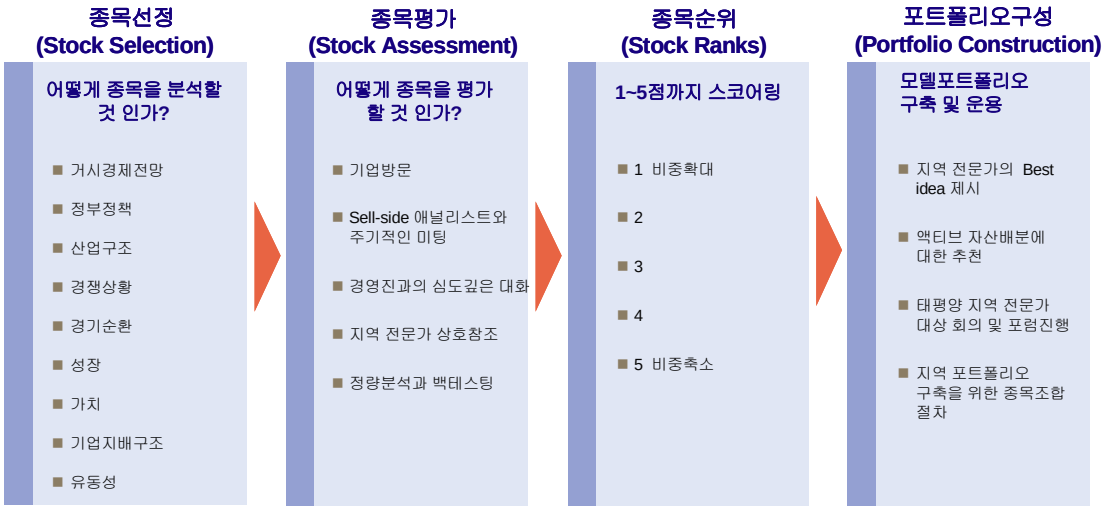

3)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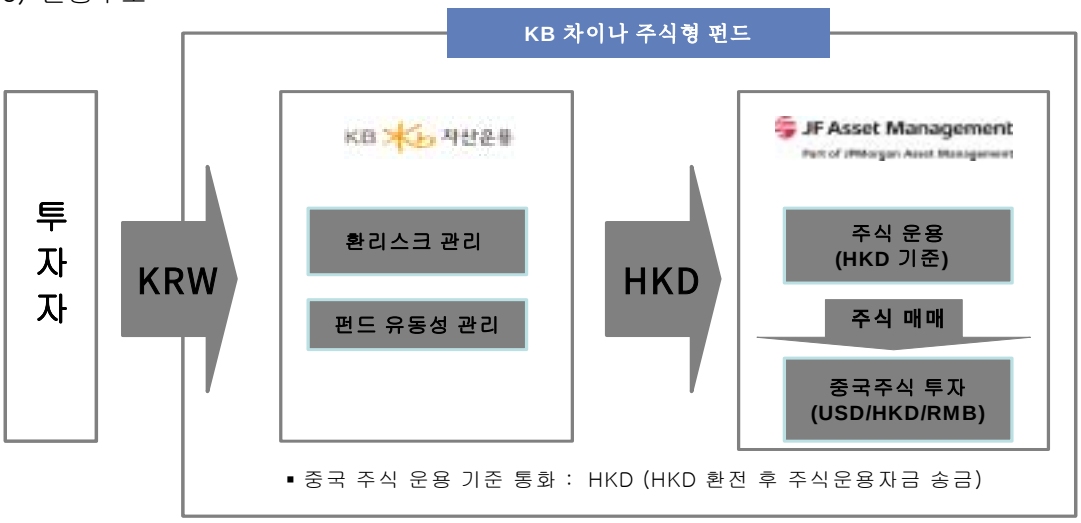

※ 환헤지는 자투자신탁에서 일어나며 헤지 비율은 90% 수준으로 될 예정입니다.

4) 투자전략

① Top-Down(거시경제분석과 섹터선정)과 Bottom-Up(종목선정)의 조화

② 개별종목의 벤치마크 대비 투자재량(Active betting)은 0.5%~3.0% 수준

2.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중국관련 유가증권등과 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해외 및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중국 및 중국관련 유가증권 등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금리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해외투자자산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중국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며, 중국 시장의 특성상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에 대해 원/홍콩달러 통화선물 등을 통한 환위험 제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헤지 단위 수량의 문제, 투자수익(투자원본 이외)에 대한 환노출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라 부분적인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화와 홍콩달러간의 환율변동에 대해서만 헤지를 하며, 기타 다른 통화간에는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 수익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 유가증권은 국내 유가증권보다 환매기간이 길게 소요됨으로써 당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환매기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해외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이므로 환매시 주식투자손실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자산의 이익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 거래에 따른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이 발생할 경우, 또는 해당 국가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KB 차이나 주식형 모투자신탁	90%이상	- 중국관련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60%이상 (이때, 파생상품은 10%이하) - 채권: 40%이하 - 어음: 40%이하
②	유동성자산등	10%이하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로 운용하는 것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거래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산의 평가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이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원칙을 적용하여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세우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 비율에 의해서만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1) 수익증권의 종류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③ C-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대상

④ C-F 클래스 수익증권: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2)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매입도 가능합니다.

3) 수익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투자신탁의 설정이 있을 경우 모투자신탁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2. 환매관련 유의사항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3)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4) 환매수수료

① **A 클래스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② **C 클래스 수익증권, C-E 클래스 수익증권 및 C-F 클래스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제1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7영업일	제8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분배관련 유의사항

1)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1)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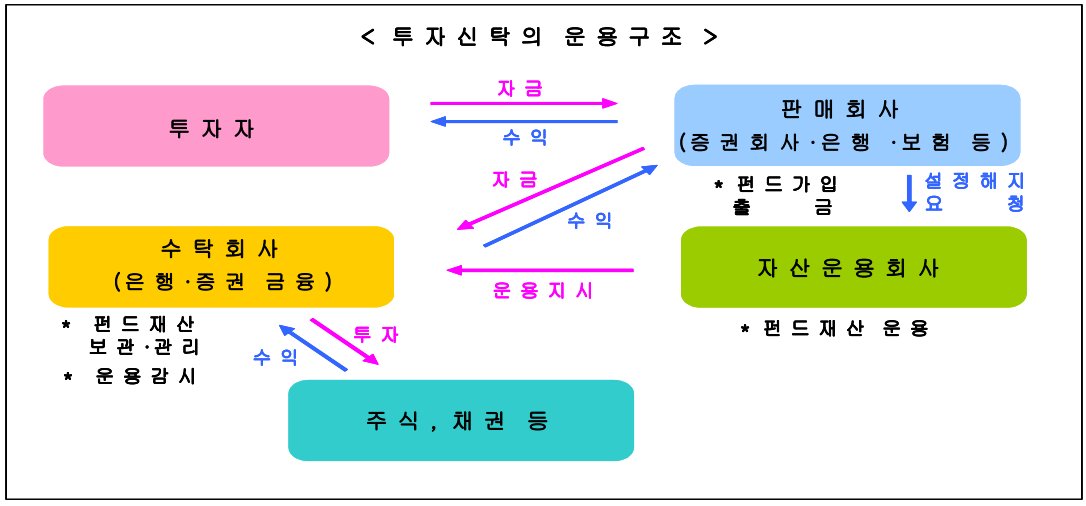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증권타워

2. 주요 업무

1)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⑤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업무의 위탁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팀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합니다.
   ③ 상기 업무 등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천원)

과 목	제20기	제19기
기 간	2007.04.01~2008.03.31	2006.04.01~2007.03.31
현금 및 예치금	99,602,506	75,270,652
유가증권	743,180	10,381,100
대출채권	1,402,134	672,357
유형자산	97,977	93,853
기타자산	12,918,784	10,961,141
자산총계	114,764,581	97,379,103
예수부채	1,761,401	370,974
기타부채	10,721,715	9,514,504
부채총계	12,483,116	9,885,478
자본금	38,337,750	38,337,750
이익잉여금	63,869,852	49,171,84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863	-15,967
자본총계	102,281,465	87,493,625
부채와 자본총계	114,764,580	97,379,103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09월 29일 기준, 단위: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총 수탁고
40,567	12,979	4,759	83,628	8,911	7,629	15,068	3,806	177,347

< 유형별 운용자산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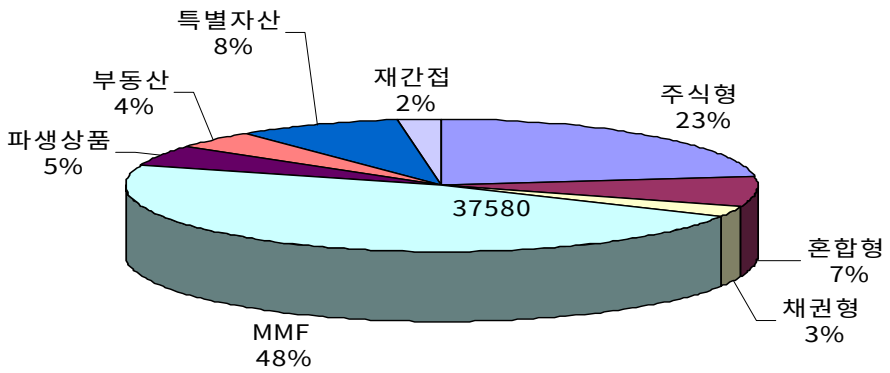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 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임광택	44세	이사	32개	22,991억	장기신용은행 5년 8개월, 미래에셋자산운용 2년 1개월, KB자산운용 5년 9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Ⅰ-1.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JF Asset Management Limited
2) 주소: 21st Floor, Chater House, 8 Connaught Road Central, Hong Kong
3) 주요 주주: JP Morgan 100%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주요 연혁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생략
	☎ 1588-9999	
	www.kbstar.com	
대신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1588-4488/1544-2000	
	www.daishin.co.kr	
대우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1588-3322	
	www.bestez.com	
푸르덴셜증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 1588-4588	
	www.pru.co.kr	
하나대투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1588-3111	
	www.hanadaetoo.com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588-1111	
	www.hanabank.com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1588-0030/1544-0050	
	www.ibks.com	

2. 주요 업무

1)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①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②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판매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전화번호	☎ 1588-7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2. 주요 업무

1)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①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투자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신탁약관 제19조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전화번호	☎ 1588-9999
회사연혁	2000.09 일반사무관리업무 개시

2.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2. 주요 업무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3)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다음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수탁회사의 변경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74조에 따릅니다.

2. 잔여재산분배

1)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

1)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1) 영업보고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사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비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신탁약관 변경
   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ⅱ)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② 신탁약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21~22페이지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④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⑤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⑧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정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ⅰ)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ⅱ)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ⅲ)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ⅰ)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ⅱ)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_____

□ 판 매 일 : _____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